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11월4일(수) · 주간제45호 · 통권 제1491호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구독료 월3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1/ 04 통권 149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질서 있는 자유가 인재 만든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회계사의 필사즉생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실자산·부외부채를 없애야 공익이 삽니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 중 업무관련 부분만 손금인정됨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 2019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선하증권 양도자의 공급가액과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하면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법인세무조사결과 적출쟁점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 계산차이 >

조사쟁점사항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율(약 40%)과 지방소득세율 10% 합 종부담율
현금매출누락	해당액×10%(총액에 매출부가세 과세)	2억 초과부터 20%	한계세율 1억 초과 35%부터	100% 초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10% 가산세 3% 등	×	×	13%
본 · 지점간 오류 반영	해당액×5% 가산세	×	×	최소 5%
허위비용반영(증빙없음)	해당액×10%	2억 초과부터 20%	접대비 부인 종결되면	46% 초과
허위가공경비(증빙없음)	해당액×10%	2억 초과부터 20%	상여소득처분 35%	100% 초과
계정 재분류(접대비 간주)	해당액×10%	2억 초과부터 20%	기타사외유출	46% 초과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91 호 / 주간 45호 2020. 11. 04.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매월 구독 · 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세무조사결과 적출쟁점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 계산차이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회계사의 필사즉생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실자산 · 부외부채를 없애야 공익이 삽니다	2
C E O 에 세 이	질서 있는 자유가 인재 만든다	3
세무 · 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교환사채 등의 전환권 등은 기타자본으로 반영하였다가 행사시점에 자본으로 대체함	5
	-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임 - 자기차량을 업무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20만원 한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 가능함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 중 업무관련 부분만 손금인정됨	7
매일절세재무요점	- 임대사업소득과 임금근로소득 소득세 비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9 10
직장인Survival	태도는 인생을 결정한다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10, 2020.02.27)	12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990, 2020.04.20)	13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세무조사 전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억지 조사 막는다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선하증권 양도자의 공급가액과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하면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12
세 무 정 보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5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29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33
회 계 정 보	- 2019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36
경 영 정 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7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4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 재정환율	32

회계감사인의 필사즉생 개념 : 외부회계감사에서 사람이 아니고 부실자산 · 부외부채를 없애야 공익이 삽니다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재무상태표계정	부실자산의 개념, 범위, 유형, 발생이유	감사인 대응책
현금예금	실제 예금이 부족한데도, 과거금액 기재, 잔액증명 없음	외부조회서 발송 확인
매출채권	과다매출반영의 대응계정, 대금회수지연 또는 불능	대손충당금 설정과 상각
재고자산	매입, 생산, 제조원가 과잉, 장기간 판매 안된 불량제품 등	매출원가, 영업외손실 반영
유동자산	선급금, 대여금 등 특수관계거래, 장기간 회수안되고 방치	손실반영, 대손처리
투자자산	종속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등 운영부실, 손실누적	자산손상차손 반영
토지, 건물	과잉가격취득 또는 시세하락, 비업무용 불용자산 등	손상차손 반영,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생산시설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의 감가상각(정률법, 정액법) 실행	감가상각비용, 원가반영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 실현가능가액 계산	자산손상, 감가상각 반영
부외부채	외국금융회사에서 해외차입, 원재료 수입신용장	미착원재료와 부채반영 부채반영하면서 대응손실인식
우발채무	미래우발사건으로 채무확정, 어음배서, 지급보증 등	주석사항 반영 확실하면 손실과 부채반영

질서 있는 자유가 인재를 만든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아시아 · 태평양 정상회담 뉴스에서 늘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공식회담 후 캐쥬얼한 복장으로 각국의 정상들이 정원 같은 곳에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고 만찬을 즐기며 친교한다. 그것을 기념 촬영한 장면이다. 넥타이에 정장차림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유연성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상외교에 훨씬 보탬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칼 라일의 말처럼 의복은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유니폼이나 정장을 하면 법을 지키고 체제를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왠지 융통성을 갖고 파격적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데는 어색하다.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창조적 일에는 부적합하다. 군인이나 법관들이 유니폼에 어울리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들이 자유복으로 제멋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이미 군인이나 법관이 아니다. 오랜 세월 미국같은 선진국 기업에서도 블루칼라들에게는 유니폼을 입혔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들은 흰 넥타이에 정장을 해왔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니폼의 블루칼라들을 다루기에 유리하고, 은행원 같은 화이트칼라들에게는 긴장감있는 깔끔함이 덕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Fila코리아의 사무실에 처음 온 사람들마다 놀라는게 있다. 직원들이 너무도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때문이다. 근무복장도 캐쥬얼하게 자유롭다. "방임(放任)"으로 보이기도 할 것이다. 넥타이에 점잖은 와이샤츠 차림으로 일하는 다른 직장에 익숙한 이들 보기에는 파격적일 것이다. 현대경영에서 혁신적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박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연하지 못한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하는 것이 좋다. 권위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자율이 뿌리내리기 용이하다. 필자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친구 같고 선후배 같기를 바란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회사가 엉성하고 질서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자유속에 엄격한 질서가 있다. 기본적 룰(Rule)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일테면 출근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지각을 하면 그걸 고려해서 보너스에 반영한다. 보너스를 뺏긴 직원들의 몫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분배된다. 이런 원칙에 직원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출근 시간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사무실 청소를 한다. 다른 회사처럼 청소직원에게 따로 맡기지 않는다. 직원들이 직접 바닥이며 책상등을 쓸고 닦다 보면 그만큼 "자기 회사"라는 인식이 더 들게 마련이다. 특히 신입사원들은 최소한 1년 동안은 청소 당번이 된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Fila맨으로 다시 태어난다.

We are proud. We are innovative. We are passionate. We are creative. We are confident.

혁신적이며 정력적이고 창조적인 인물. 젊고 자신감에 넘친 인물.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인물. 그러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경우가 바른 사람이 진정한 Fila맨이다. 직원들은 할 일을 스스로 척척 알아서 하고 어떤 지시에도 바로 능동적으로 시행할 줄 안다. 기업의 일을 군인처럼 해서도 안되고 가족 일처럼 해서도 안된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매킨지의 굽타회장은 21세기에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고 갈파했다. 자유로우나 엄격한 질서와 공정한 원칙 속에서 인재가 자라나는 법이다.

교환사채 등의 전환권 등은 기타자본으로 반영하였다가 행사시점에 자본으로 대체함

Q

1. 자기주식 교환대상으로 교환시 회계처리 문의
   교환청구기간 시 100% 교환 가정
2. 사채 : 10,000원 (1000주 * 10원)
   전환가액: 10원
   자기주식 주당 : 20원

A

교환사채 발행당시의 회계처리 사항과 전환권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사채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되며, 전환권대가 등은 기타자본으로 분류하였다가 전환권 등이 행사될 때 자본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증가하는 자본과 자기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됨

Q

업무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에 발생여부에 따라 매입공제와 불공제가 판단되는데
테슬라 전기차량을 중고로 구입시 개별소비세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비영업승용차에 해당되는걸로 판단되어 지는데
중고로 테슬라 전기차량을 구입할때 매입공제가 되는건가요?

A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임

Q

1. 해외거주자 이벤트를 진행하여 내국인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기타소득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비거주자 기타소득이 아닌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처리할 수는 없나요?

2. 만약,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추가로 처리하거나, 혹은 당첨자들이 처리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상세히 안내부탁 드립니다.

A

1. 거주자, 비거주자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충족하지 못하면 비거주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신고반영하면 되며 추가의 세무처리절차는 없습니다.

자기차량을 업무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20만원 한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 가능함

Q

야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차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 내부 규정 유류대 산출식에 따라 금액 도출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증빙 없이 사실 증명만 가능하면 증빙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에 야근 교통비 자차에 대한 유류대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야근을 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증빙대체가 가능한가요?

A

자기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에 한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구체적인 지출증빙(신용카드전표 등)을 근거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는 구체적 출장장소 등이 기록된 자료로 여비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있으면 여비로 지급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야근후 여비지원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나,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야근할 사실 등과 업무관련성여부가 입증되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 중 업무관련 부분만 손금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현대 기업들의 업무 특성상 많은 일들이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외부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비용도 이러한 비용 중의 하나인데, 통상 기업들은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회사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용료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만 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법상 업무관련 통신비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의 사용요금은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나 통신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종업원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사규 등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내근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정도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부영업직원이 아닌 내근직원의 경우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내근직원에게 지원되는 휴대폰 사용료는 법인의 순수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한 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지원한 휴대폰 보조금 등이 업무관련 통신비로 인정받더라도 법정지출증빙영수증의 수취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영수증을 수취

하여야 하지만, 휴대폰 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대납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기가 어려운바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휴대폰사용료에 대한 비용처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적격증빙영수증 수취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 제도 46012-11811, 2001. 6. 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업무관련된 통신비의 매입부가가치세도 공제 가능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휴대폰사용료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한다.

♣ 서이46012-11470, 2003.08.09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에 따른 회계처리

회사에서 부담한 임직원의 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통신비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업무관련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휴대폰 사용요금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는 통신비로 반영하였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휴대폰 사용요금의 지원시

차) 통신비	100,000	대) 현금	100,000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임대사업소득과 임금근로소득 소득세 비교

	등록임대사업자	임금근로자
소득액	연 9,000만원 (150만원*5채*12개월)	연 9,000만원
소득공제	1242만원(13.8%+150만원) 2천만원이상 단순경비율 적용	300만원(기본공제 2인) 1,425만원(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액	7,608만원	7,275만원
세액계산	1,303만원 (7,608*24%-522만원)	1,224만원 (7,275*24%-522만원)
세금감면	325만원(75%감면)	-
납부세액	임대소득세 325만원	근로소득세 1,224만원

화 주택소유주가 임대주택 2채를 처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

40㎡이하는 재산세 면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로 비과세
임대소득세는 경비율 60% 적용, 기본공제 400만원에 14%, 세율로 24만6천원
→ 8년 이상 임대 시 75% 감면으로 최종액 6만1,600원

	등록임대사업자	3주택자	비고
재산세	1,604,400원	2,078,400원	기타비용 및 부가세 제외
임대소득세	61,600원	728,000원	
양도소득세	면제	17,710만원+14,335만원 총 32,045만원	
종합부동산세	9억 초과분 43,524원	6,265,963원	
총계	170만원	3억2952만원	

중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소득세 · 법인세의 5~30% 감면(~'20. 12. 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 12. 3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10개 제도 운영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의 0. 1~0. 2%를 세액공제 (~'20. 12. 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 12. 31)
중소기업창투사 등의 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비과세 특례제도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126조의2)	소득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 ('20년 한시 상향)
기타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 운영 중	적용기한 연장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현행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개정 내용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신탁의 변경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개정 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미납한 상태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세 회피행위 방지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태도는 인생을 결정한다

심리학자 멜라비언이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한 결과 비언어적인 표정(55%)과 음성(38%)이 대화(7%)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태도(표정+음성)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속에 귀찮은 듯한 음성이 묻어나오거나, 반갑지 않는 표정을 짓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말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게 더욱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반면, 표정없이 무뚝뚝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도는 표정과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 보다 더 솔직하며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태도에 따라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보다 열린 태도, 배우려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좋습니다. 존 맥스웰의 말처럼 태도는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고, 태도는 과거를 기록하는 사서이며, 현재를 보여주는 대변자이며,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입니다. '태도(Attitude)'는 가장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성공의 지표 입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선하증권 양도자의 공급가액과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하면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서면법령법인-78, 2020.03.25

▌질 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선하증권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10, 2020.02.27

▌질 의

○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할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 성과급 지급 전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외부 주주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매입가격인 액면가액을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성과급 지급 전에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였으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원주주가 아닌 외부주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2912, 2020.04.16

▌질 의

◦ OO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사단법인 △△과 함께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에 관심있는 대학생 등 15세 이상 미취업자 150명을 선발하여 프로젝트 기반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인력 확보 및 연수기간 동안 타 과정 병행 없이 집중훈련을 위해 내부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혜택을 줌

1) 매월 100만원 장학금 지급 (총 600만원)

2) 1회 한도 개발용 IT기기 지급 (150만원)

질의내용

◦ 해당 장학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33(2014.07.03.) 및 재산세과-072(2012.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과-233, 2014.07.03.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072, 2014.02.23.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 · 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990, 2020.04.20

▌질 의

◦ 질의법인은 00협동조합으로, 조합원 중 □□어선 감척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중 일부를 질의법인과 잔존조합원(비감척조합원)이 지원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감척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중 일부를 잔존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조합원 분담금 또는 조합 회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세무조사 전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 억지 조사 막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세정지원 방안과 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에 대해 자문했다.

앞서 국세청은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줄이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물꼬를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홈택스 2.0을 구축해 납세 전 과정에서 일원화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AI 신고도움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 모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

조직문화를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청, 재고 면세품 판매 연말까지 연장… 면세업계 위기 극복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업계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본래 10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또한, 관세청은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제3자 반송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조만간 당정이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내놨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이 중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당정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 0.03%p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1~0.4%다. 당정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자는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는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9억원이면 시가로 12억원이 넘는데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즉 서민보다 중산층에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2020. 10

1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내국법인 및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개념 및 용어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내국법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거주자는 신고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

용 어	정 의
내 국 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과 세 연 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익 금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되는 수익
손 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

◈ 법인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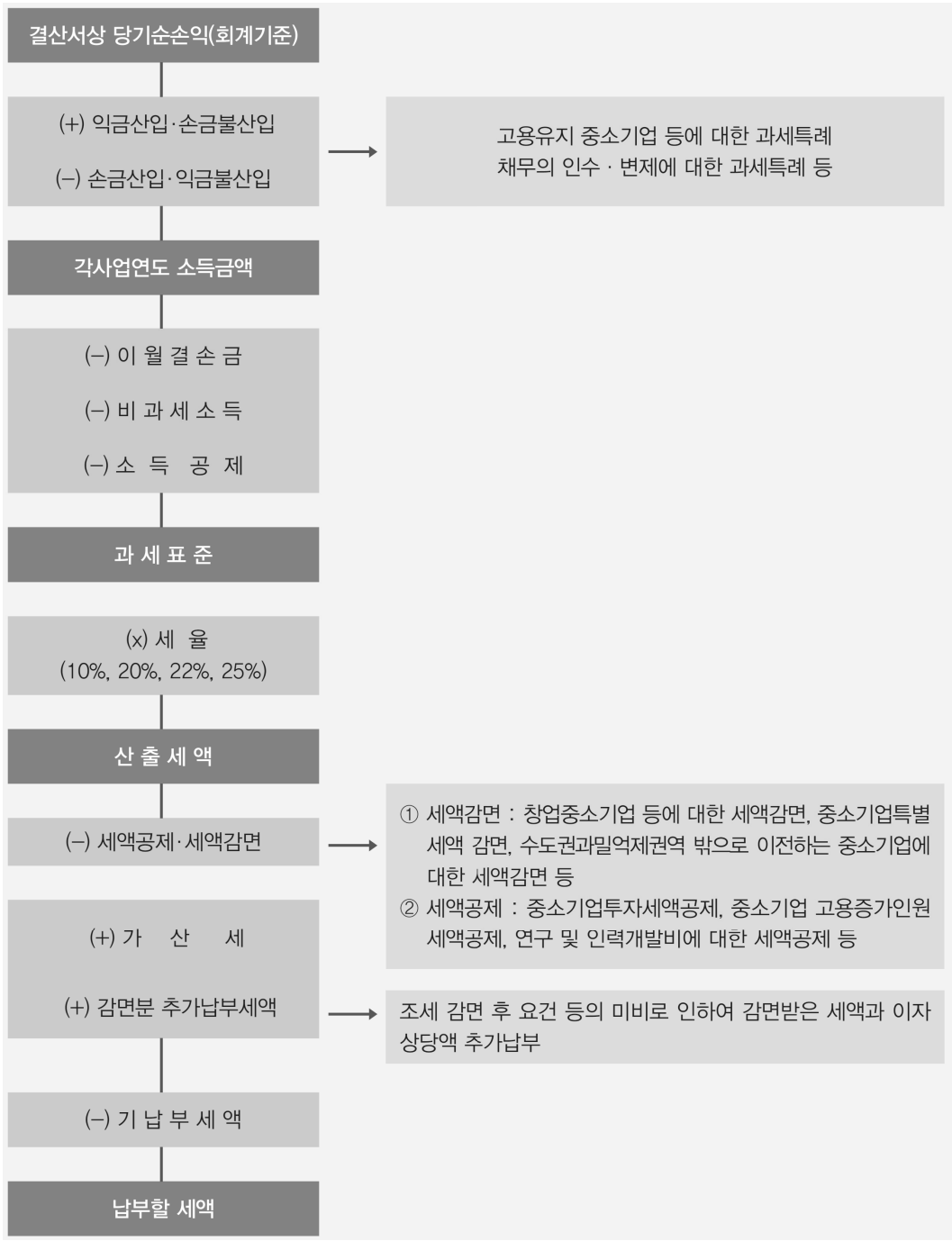

◈ 소득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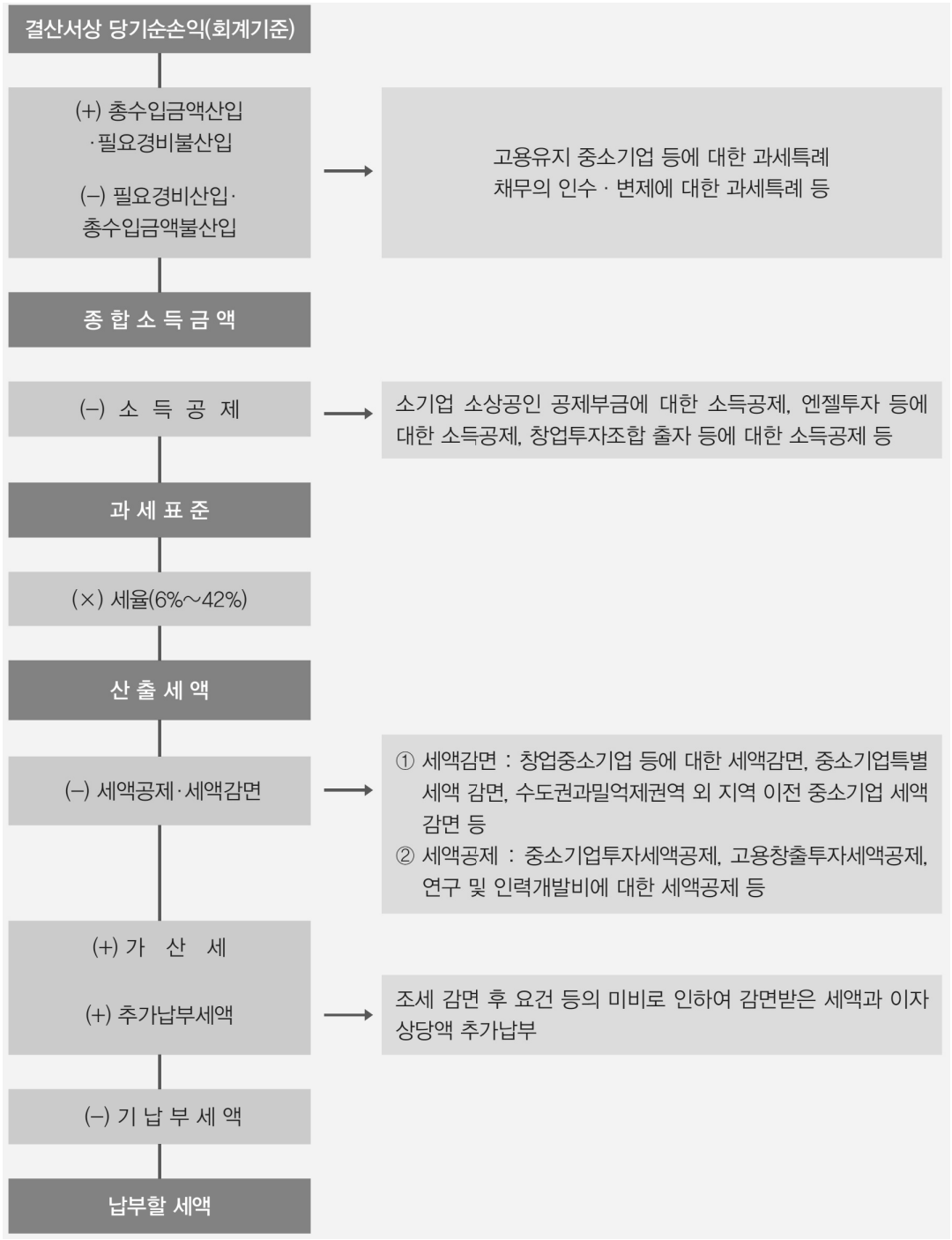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창업 · 고용 · 투자 ·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 ·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법인세(소득세) 3년간 75% + 2년간 50% 감면(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은 제외)은 5년간 50%) *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 사내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하여 감면 * 청년(15~34세) 및 생계형(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면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출자로 인하여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 ②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해 ①의 기업에 대한 출자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이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신규설립 출자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에 증자하여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단, 출자 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되면 세액공제액 환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공동투자에 대한 협약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투자대상기업에 유상증자로 출자시 주식 등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 공제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① 창투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②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③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기술자 등 조건만족)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 벤처기업은 행사비용에 대한 경비는 손금불인정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 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의 10%(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를 2년 이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 사전상속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한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벤처기업과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소유한 해당 주식을 전략적제휴 계획에 따라 제휴법인의 주식과 교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제휴법인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1년 이내에 재투자한 경우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3년 이상 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일정요건의 재기중소기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납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td><td>중소기업으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세(소득세) 감면
<table>
<tr><th>소 기 업</th><th>중 기 업</th></tr>
<tr><td>• 도매업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td><td>•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산업 : 10%</td></tr>
<tr><td colspan="2">감면한도: 1억원 - (전년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X 500만원)</td></tr>
</table>
※ 도매업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td></tr>
<tr><td>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td><td>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을 다음의 한도 내에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td></tr>
<tr><td>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td><td>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를 세액공제</td></tr>
<tr><td>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td><td>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td></tr>
<tr><td>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td><td>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td></tr>
<tr><td>접대비의 손금산입</td><td>3,600만원(월할계산) 한도 접대비 손금산입</td></tr>
</table>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납부한 법인세(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감면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인 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에 대해 2.6%(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투자금액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중고품 제외)의 3%(중견기업 1~2%) 세액공제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의 7%(중견기업3%, 그외1%)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7%(중견기업3%, 그외1%)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5%, 그외2%)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5%, 그외3%) 세액공제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5%, 그외3%) 세액공제 • 근로자복지 증진 직장어린이집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10%, 그외10%) 세액공제 • 안전시설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5%, 그외1%)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금액(중고품 제외)의 10%(중견기업 7%, 그 외 5%) 세액공제(단, 투자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연구개발비 차지비율이 2% 이상이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최초등록 특허권 보유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제작자로서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등 영상콘텐츠 국내 제작비용에 관하여 10%(중견기업 7%, 그외 3%) 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축소) 후 국내 복귀시 5년(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법인세 등 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100%(50%) 감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여 선택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방법 적용하여 법인세(소득세)법 준용

◈ 중소기업 연구 · 인력개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 ㉡) ㉠ 중소기업 30%, 기타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frac{\text{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및인력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3,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② ①을 제외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 ㉡중 선택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발생액 초과금액×25%(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용×10~25%(중견기업 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 산입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특허권 등의 취득금액 10%(중소기업 외 5%) 세액공제, 법인세의 10% 한도

	•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중소기업 외 35%), 재산세 50%(중소기업 외 35%) 경감

◈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통합 후 법인에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75%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승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및 법인의 취득세 75% 감면 •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전환 중소기업(공장신설의 경우)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대상)

◈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및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등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기간내 사업전환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12.1.1~'21.12.31)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공제 ①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1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105%)×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15% • 해당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총액의 5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청년(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는 100%, 청년(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는 50%(신성장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75%)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 고용 중인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 시 보험료 50%의 금액을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된 경우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법인세(소득세) 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감면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성과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으로 인정 •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감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고용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세액공제 • 육아휴직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복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수의 400~1,2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2년간 상시근로자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납부)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로 재직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200~500억원 한도)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허용 ①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 20년 분납 또는 5년 거치 15년 분납 ②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 10년 분납 또는 3년 거치 7년 분납
가업의 승계에(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

◈ 조세특례 제한 등

구 분	지 원 내 용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법인세 등의 계산 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 • 중소기업 최저한세 세율은 7%(일반기업 8~17%)
중복지원의 배제	• 동일자산별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일정한 중복적용 배제 • 동일 과세연도에 일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다만, 1989.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개념 및 용어

-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조세감면의 유형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 · 수익 · 행위 · 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서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

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4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 개념 및 용어

- 지방세 특례란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 수 도 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 기획재정부, 2020. 10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29.(목) 10:00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하였음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020. 10. 29.(목) 10:00~11:00

▸ 장　　소 : 대한상의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회의실

▸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소득법인세정책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선주협회 본부장급 등

○ 이번 간담회는 7.22일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단체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노력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의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개인사업자)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6~42%)로 과세
(개인유사법인) 법인세율(10~25%)로 과세된 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 · 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

◉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제시하였음

< 시행령 개정사항(안) >

- (유보소득 제외 항목) ❶이자 · 배당소득, ❷임대료, ❸사용료 및 ❹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 · 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예: 50% 미만) 법인*, 즉 "적극적 사업법인"이,
  *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차감 제외
  - ■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❶투자 · ❷부채상환 · ❸고용 · ❹R&D를 위해 지출 · 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 (적용제외 대상)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 · 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인 · 허가 등의 요건으로 다른 법령에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 同 개정사항 감안 시 투자·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가피한 유보 사례 등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경제단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임

○ 금일 제안된 내용 등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임

별첨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

[제도 도입 취지]

◉ 정부는 그 간 세법개정 방안의 큰 축의 하나로 세제측면에서의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중의 하나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16년) 소규모법인에 대한 접대비 ·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축소
  ('17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법인설립을 통한 절세사례 확산 등에 따라 법인으로서의 적극적·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설립 시 감사 필요 → 최저자본금 규정 폐지, 감사 불필요

** (개인사업자)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6~42%)로 과세
(개인유사법인) 법인세율(10~25%)로 과세된 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

정 · 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
*** '10년 대비 '19년 1인 주주법인 비중은 약 3배 증가(10.6%→32.2%)
가동법인 대비 1인 주주법인 비중(%): ('10년) 10.6 ('15년) 23.9 ('18년) 30.5 ('19년) 32.2

◉ 이에 정부는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 설립 · 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함

< 법안 개요 >

◉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 (적용방식)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배당가능소득×50%, 자기자본×10%]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 시 소득세 과세 제외

[제도 설계방안]

◉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되, 합리적 · 생산적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음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❶이자 · 배당소득, ❷임대료, ❸사용료 및 ❹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 · 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예: 50% 미만) 법인*, 즉 "적극적 사업법인"이,
*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차감 제외
-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❶투자 · ❷부채상환 · ❸고용 · ❹R&D를 위해 지출 · 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예정임
○ 즉,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 또한,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 · 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른 법률 · 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 금번 제도 발표 이후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감안할 때, 투자 · 고용 등 적극적 · 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금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❶지분율 요건, 法), 합리적인 사업 활동 없이(❷유보소득 제외 요건, 令) 과다하게 유보한 소득(❸유보수준 요건, 法)에 한해 적용되므로,

○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음

◉ 또한, 금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항목 외에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반영해 나가겠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3일 (금)	10월 26일 (월)	10월 27일 (화)	10월 28일 (수)	10월 29일 (목)
미 달 러 (USD)	1134.10	1134.60	1129.10	1127.60	1129.30
일 본 엔 (JPY)	1081.28	1083.51	1076.72	1078.99	1082.28
영 국 파 운 드 (GBP)	1483.46	1479.97	1469.75	1468.92	1466.34
캐 나 다 달 러 (CAD)	863.71	862.55	854.83	854.47	848.17
홍 콩 달 러 (HKD)	146.33	146.40	145.69	145.50	145.71
위 안 화 (CNH)	170.40	169.96	169.09	168.44	168.23
유 로 화 (EUR)	1340.68	1343.99	1333.47	1328.26	1326.36
호 주 달 러 (AUD)	808.56	808.29	804.09	802.46	796.04
싱 가 폴 달 러 (SGD)	836.08	835.71	829.43	828.02	827.42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73.67	272.90	271.06	270.83	271.69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 행정안전부, 2020. 10

◉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다.

◉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 · 주택가액 · 면적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규모)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되었다.

○ (지역별) 수도권에서 1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가액별)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되었고,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적별)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하였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40대(26.2%) - 50대(14.7%) - 20대(11.2%) -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 ·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 (대상)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 (주택기준) 3억 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존과 동일)

○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도 완화

◉ (감면율)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여,

○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 기존 제도와의 비교(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분	기 존(§ 36의2)	신 설(§ 36의3)	비고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확대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同
주택 면적	▸전용 60㎡ 이하	▸면적제한 없음	확대
감면율	▸50%	▸1.5억 원 이하 100%, 그 외 50%	확대
소득 기준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외벌이 5천만 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	확대
감면 기한	▸'19.1.1.~12.31. / '20.1.1.~12.31.	▸'20.7.10.(정책 발표시점) ~'21.12.31.	-

2019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0. 10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은 총 185개로 전기 대비 3개 증가하였으며, 등록회계사(21,758명)의 56.3%(전기 대비 1.6%p↑)가 회계법인 소속

◈ 회계법인 매출액은 3조 9,226억원으로 전기 대비 13.2% 증가 하였으며, 4대 법인의 매출 점유율(50.5%)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

◈ 외부감사 회사 1사당 평균감사보수(38.2백만원)는 감사투입시간 증가 및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전기 대비 21.6%(4대 법인은 30.1%) 상승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강화 유도 등을 위해 금년부터 5억원 이상 이사보수(57명), 품질관리 예산(평균 3%), 지배구조 등을 신규로 공시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회계법인 현황 등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내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기업에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피투자기업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판단정보를 제공하고자 회계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하여 공시

Ⅱ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3월말 결산법인으로 '20.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그 외 법인(11개)은 '20.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

1 회계법인 일반현황

가. 회계법인 數 : 총 185개 (3개↑)

◉ '20.3월말 현재 회계법인(금융위원회 등록)은 185개로 전기 대비 3개 증가*

* 신설 +12개(백한, 세화, 서원, 상지, 다음, 현무, 마일스톤, 삼성, 윤성, 도담, 태인, 이도)
흡수합병 △8개(승일, 지율, 지성, 동아, 바른, 경신, 유진, 명일), 해산 △1개(신아)

○ 규모별로는 소속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대형법인)은 17개, 40~99명(중형〃)은 28개, 40명 미만(소형〃)은 140개로, 대형과 중형이 증가

– 주권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실시로 중·소형회계법인 간 다수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회계법인 규모는 중·대형화 추세를 보임

* 감사품질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가 가능한 바, 소속 공인회계사 수는 40명(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이하 "등록법인")은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한 총 40개가 등록되었으며 대형(16개)과 중형(24개)에 분포

– 상장회사 감사인 미등록법인은 대형 1개, 중형 4개 및 소형 140개

소속 등록회계사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FY17	FY18 (A)	FY19 (B)		전기대비 변동 (B-A)
소속 등록 회계사	100명 이상	12	14	17	(16)	+3
	40~99명	23	25	28	(24)	+3
	40명 미만	140	143	140	(-)	△3
전체		175	182	185	(40)	+3

* ( )는 등록법인

나. 등록회계사 數 : 총 21,758명 (회계법인 소속은 12,240명, 비중 56.3%)

◉ (등록회계사 분포) 등록회계사는 총 21,758명으로 전기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56.3%인 12,240명으로 전기 대비 7.1% 증가

○ 등록법인 소속은 전체의 44.1%인 9,598명으로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78.4%를 차지

○ 4대 회계법인 소속은 5,849명으로 전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전체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 비중은 47.8%로 소폭(△0.8%p) 하락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FY2017		FY2018		FY2019		전기대비 증감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증감률	비중 증감
회계법인 소속	10,698	53.3	11,426	54.7	12,240	56.3	+814	+7.1	+1.6
4대 법인	5,191	(48.5*)	5,558	(48.6*)	5,849	(47.8*)	+291	+5.2	(△0.8)
총 등록회계사	20,059	100.0	20,884	100.0	21,758	100.0	+874	+4.2	-

* 전체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수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 4대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삼일, 삼정, 안진은 증가한 반면 한영은 소폭 감소

4대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p)

구분	FY2018		FY2019		전기대비 증감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증감률	비중
삼일	1,987	35.8	2,165	37.0	+178	+9.0	+1.2
삼정	1,580	28.4	1,675	28.6	+95	+6.0	+0.2
한영	1,057	19.0	1,025	17.5	△32	△3.0	△1.5
안진	934	16.8	984	16.8	+50	+5.4	+0.0
합계	5,558	100.0	5,849	100.0	+291	+5.2	-

◉ (경력별 현황)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경력은 15년 이상이 28.5%(3,484명)로 가장 많으며, 이 중 등록법인 소속은 65.6%, 4대 회계법인 소속은 17.9%임

○ 4대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가 과반수(56.5%)를 차지하는 반면, 4대 회계법인 外 중소형 회계법인은 10.4%의 비중

경력별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년이상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수	922	1,660	1,387	2,581	2,206	3,484
등록법인 (비중*1)	906 (98.3)	1,583 (95.4)	1,257 (90.6)	2,034 (78.8)	1,534 (69.5)	2,284 (65.6)

4대법인 (비중*1)	874 (94.8)	1,449 (87.3)	980 (70.7)	1,252 (48.5)	671 (30.4)	623 (17.9)
4대법인 外*2 (비중*1)	48 (5.2)	211 (12.7)	407 (29.3)	1,329 (51.5)	1,535 (69.6)	2,861 (82.1)
경력별 구성비*3	7.5	13.6	11.3	21.1	18.0	28.5
등록법인	9.4	16.5	13.1	21.2	16.0	23.8
4대법인	14.9	24.8	16.8	21.4	11.5	10.7
4대법인 外*2	0.8	3.3	6.3	20.8	24.0	44.8

*1 회계법인 소속 경력별 등록회계사 중 등록법인, 4대법인 및 그 외 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비중
*2 4대법인 외 등록법인 + 미등록 법인의 합산
*3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총원 중 각 경력구간별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 한편, 전체 회계법인에 소속된 수습회계사*(미등록회계사) 1,082명의 96%(1,039명)가 4대 회계법인 소속으로,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 등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 후 등록 가능

– 수습회계사가 4대 회계법인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등록 후 5년 내외의 경력을 쌓고 중소형 회계법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임

◉ (인력구성 현황) 회계법인 소속 전체 등록회계사 중 이사의 비율은 25.6%로 전기(28.8%) 대비 감소(3.2%p↓)

○ 등록법인(15.3%, 전기대비 3.1%p↓)의 경우 이사가 다수 소속회계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관리체계로 조직화 됨에 따라 이사 비율이 미등록법인(63.1%, 전기대비 0.7%p↓)과 차별화

○ 회계법인 소속 총인원*은 26,447명으로, 그 중 공인회계사(수습 포함)가 50.4%이고 공인회계사 外 인력은 49.6%로 비슷한 수준

* 등록, 수습회계사 외 변호사, 세무사, IT 전문가 등 전문가, 그 밖의 일반직원으로 구성

– 특히 상장회사 감사인 미등록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外 인력비중(67.9%)이 상대적으로 높음

회계법인 인력구성 현황

(단위 : 명, %)

구분	등록회계사				수습 회계사 (C)	총회계사		기타 인력		총원 (F)
	(A)	이사 (B)	이사비율 (B/A)	이사비율 전기		(수습포함)(D=A+C)	비중 (D/F)	(E)	비중 (E/F)	
등록법인(40사)	9,598	1,467	15.3	18.4	1,076	10,674	58.7	7,518	41.3	18,192
4대법인	5,849	406	6.9	7.6	1,039	6,888	62.1	4,196	37.9	11,084
4대법인외(36사)	3,749	1,061	28.3	36.7	37	3,786	53.3	3,322	46.7	7,108
미등록법인	2,642	1,667	63.1	63.8	6	2,648	32.1	5,607	67.9	8,255
전체 회계법인	12,240	3,134	25.6	28.8	1,082	13,322	50.4	13,125	49.6	26,447

2 회계법인 영업현황

가. 전체 매출액 : 총 3조 9,226억원 (13.2% ↑)

◉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총 3조 9,226억원으로 전기(3조 4,663억원) 대비 4,563억원(13.2%) 증가

○ 업무별로는 경영자문 1조 3,013억원(33.1%), 회계감사 1조 2,815억원(32.7%), 세무 1조 1,518억원(29.4%), 기타 1,880억원(4.8%) 順

○ 특히 경영자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회계법인 매출 중 경영자문 부문의 비중이 확대(FY 17 30.0% → FY 18 32.0% → FY 19 33.1%)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평가(운영), 기업 회계자문서비스 등 감사 관련 용역 및 M&A 자문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전체 경영자문 매출 증가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매출(540억원)은 전기(566억원) 대비 감소(26억원, 4.8%↓)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추세가 지속

○ 감사부문 매출*은 외감법 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지정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으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로 전기 대비 1,734억원(15.6%) 증가

* 세부사항은 '3.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8쪽) 참조

◉ 한편, 등록법인의 매출은 2조 9,537억원으로 회계법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3%이며, 감사와 경영자문 비중이 높음

* (업무별 점유율) 감사 82.2%, 경영자문 88.4%, 세무 57.6%, 기타 46.5%

나. 4대 회계법인의 매출액 비중 : 50.5% (0.1%p ↑)

◉ 4대 회계법인 매출액은 1조 9,796억원으로 전기 대비 2,314억원(13.2%) 증가하였으며,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

○ 4대 회계법인의 업무별 매출 비중(점유율)은 회계감사(51.2%, 1.1%p↑) 부문은 증가한 반면, 세무(33.9%, 1.0%p↓) 및 경영자문(70.7%, 2.7%p↓) 부문은 감소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및 4대법인 점유율

(단위 : 억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17		FY2018		FY2019		전기대비 변동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전체 회계 법인	감 사	9,688	32.5	11,081	32.0	12,815	32.7	1,734	15.6	0.7
	세 무	9,539	32.0	10,535	30.4	11,518	29.4	983	9.3	△1.0
	경영자문	8,953	30.0	11,089	32.0	13,013	33.1	1,924	17.4	1.1
	기 타	1,659	5.5	1,958	5.6	1,880	4.8	△78	△3.9	△0.8
	합 계	29,839	100.0	34,663	100.0	39,226	100.0	4,563	13.2	-

4대 법인	감 사 (점유율)*	4,927 (50.9)	32.9	5,554 (50.1)	31.8	6,562 (51.2)	33.1	1,008 (1.1)	18.1	1.3
	세 무 (점유율)*	3,417 (35.8)	22.8	3,672 (34.9)	21.0	3,907 (33.9)	19.7	235 (△1.0)	6.4	△1.3
	경영자문 (점유율)*	6,573 (73.4)	43.8	8,136 (73.4)	46.5	9,203 (70.7)	46.5	1,067 (△2.7)	13.1	0.0
	기 타 (점유율)*	81 (4.9)	0.5	120 (6.1)	0.7	124 (6.6)	0.6	4 (0.5)	3.3	△0.1
	합 계 (점유율)*	14,998 (50.3)	100.0	17,482 (50.4)	100.0	19,796 (50.5)	100.0	2,314 (0.1)	13.2	-

*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에서 4대 회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4대 회계법인 중 삼정의 매출 증가액(871억원)과 증가율(18.4%)이 가장 높고, 세무 및 경영자문 등 전 부문에서 큰 폭으로 성장

○ 업무별 매출 증가율은 감사에서는 한영, 세무 및 경영자문에서는 삼정이 가장 높으며, 업무별 매출액 부문에서는 삼정의 경영자문(485억원↑)이 가장 크게 증가

4대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감 사			세 무			경영자문 및 기타			합 계		
	FY18	FY19	증감률	FY18	FY19	증감률	FY18	FY19	증감률	FY18	FY19	증감률
삼일	2,092	2,360	12.8	1,673	1,852	10.7	2,366	2,635	11.4	6,131	6,847	11.7
삼정	1,519	1,773	16.7	692	824	19.1	2,533	3,018	19.1	4,744	5,615	18.4
한영	1,081	1,409	30.3	539	538	△0.2	1,741	1,933	11.0	3,361	3,880	15.4
안진	862	1,020	18.3	768	693	△9.8	1,616	1,741	7.7	3,246	3,454	6.4
합계	5,554	6,562	18.1	3,672	3,907	6.4	8,256	9,327	13.0	17,482	19,796	13.2

3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

※ 185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中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임의감사 등 제외) 보고내용을 분석

가. 외부감사 수행실적 : 총 27,939건 (3.3%↓)

◉ 전체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 외부감사 실적은 총 27,939건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전기보다 968건 감소(3.3%↓)하였고,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회사가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 포함

○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은 총 4,107건으로 전기보다 233건 증가(6.0%↑)

◉ 4대 회계법인의 감사실적은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감사대상 회사와의 계약 해지 등으로 개별재무제표 3,987건, 연결재무제표 1,346건으로 전기보다 376건(8.6%↓) 및 110건(7.6%↓) 감소

○ 4대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도 전체 외부감사 회사(개별 14.3%, 연결 32.8%)와 주권상장회사(개별 38.2%, 연결 42.6%) 모두 감소 추세

◉ 한편, 등록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 16,676건, 연결 3,321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7%, 80.9%

회계법인의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

(단위 : 건, %, %p)

구 분		FY2017		FY2018		FY2019		전기대비 증감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증감률		증감률
전체	개별	26,937	2,152	28,907	2,238	27,939	2,310	△968	△3.3	72	3.2
	연결	3,645	1,595	3,874	1,676	4,107	1,754	233	6.0	78	4.7
4대 법인	개별	4,663	963	4,363	958	3,987	883	△376	△8.6	△75	△7.8
	(점유율)	(17.3)	(44.7)	(15.1)	(42.8)	(14.3)	(38.2)	(△0.8)	-	(△4.6)	-
	연결	1,498	792	1,456	797	1,346	747	△110	△7.6	△50	△6.3
	(점유율)	(41.1)	(49.7)	(37.6)	(47.6)	(32.8)	(42.6)	(△4.8)	-	(△5.0)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나. 평균감사보수 : 4대 회계법인(30.1%↑)을 중심으로 상승(21.6%↑)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38.2백만원)*는 4대법인(143백만원, 30.1%↑)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 지속

* 회계법인의 외감법 법정감사 매출금액 / 외부감사 실적

** (FY16) 29.8백만원 → (FY17) 29.0백만원 → (FY18) 31.4백만원 → (FY19) 38.2백만원

○ 이는 외부감사 투입시간 증가 등으로 감사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4대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위험 대비 보수가 낮은 감사업무 수임을 줄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회계법인의 외감대상회사 평균감사보수 현황

구 분	FY17	FY18	FY19	증감률
외감법감사 매출액(억원)	7,816	9,083	10,669	17.5%
4대법인	4,130	4,797	5,702	18.9%
감사실적	26,937	28,907	27,939	△3.6%
4대법인	4,663	4,363	3,987	△8.6%
평균감사보수 (백만원)	29.0	31.4	38.2*	21.6%
4대법인	88.6	109.9	143.0	30.1%

* 등록법인 평균감사보수는 53.4백만원임

4 소송 현황 및 손해배상 준비재원

가. 최근 3년간 소송현황

◉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소송건은 총 56건(대상 회계법인 26개)

○ 이 중 15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종결되어 총 4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한편, '19사업연도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 진행중인 사건은 총 124건*(대상 회계법인 20개, 소송가액 8,872억원)

* 대우조선해양(안진) 6,983억원, 파티게임즈(삼정) 291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15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정, 안진) 각각 84억원 등

◉ '19사업연도 중 패소종결에 따른 배상금액은 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진행중인 소송 건수(4건↑)와 소송금액(1,086억원↑)은 증가

○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 관련 신규소송이 당기에 추가로 제기*된 영향이 크며, 회계분식 사건 관련 소송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임

* 진행중인 소송 증가금액 1,086억원 중 대우조선해양(원고)이 안진회계법인(피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금액 증가액이 810억원임

회계법인 소송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FY2017	FY2018	FY2019	3년누계
종결	민사소송건수(피소종결건)	18	22	16	56
	- 패소(일부패소 포함)	7	2	3	12
	- 화해 등	-	3	-	3
	- 승소(기각, 각하 포함)	11	17	13	41
	손해배상금액	25	12	3	40
진행	소송건수	99	120	124	
	소송금액	3,192	7,786	8,872	

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 '19사업연도말 현재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2조 2,607억원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1조 8,854억원(83.4%), 손해배상준비금 3,080억원(13.6%), 손해배상공동기금 673억원(3.0%)으로 구성

* 회계법인은 외감법 제3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등에 따른 고객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내부)을 유보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한국공인회계사회)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전기보다 3,337억원(17.3%) 증가하였으며, 이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금액(총 보상한도)의 증가(2,960억원)에 기인

○ 증가금액 중 4대 법인 증가분이 3,11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법인도 보상한도가 소폭 증가

○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시효가 연장(3→8년)되고 소송규모 증가에 대응하고자 보험가입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4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1조 8,944억원으로 전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8%이고, 등록법인 전체로는 2조 1,360억원으로 94.5%를 차지

○ 감사보수 총액 대비 손해배상 준비재원 설정비율은 4대 회계법인은 332.2%*1로 그 외 등록법인(75.5%)*2과 큰 차이를 보임

*1 (1조 8,944억원/5,702억원)*100 *2 (2,416억원/3,199억원)*100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FY2017	FY2018	FY2019	전기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손해배상책임보험	10,932	15,894	18,854	2,960	18.6
	손해배상준비금	2,510	2,769	3,080	311	11.2
	손해배상공동기금	534	607	673	66	10.9
	합 계	13,976	19,270	22,607	3,337	17.3
4대 법인	손해배상책임보험(비중)*	9,545(87.3)	14,244(89.6)	17,357(92.1)	3,113	21.9
	손해배상준비금(비중)*	1,269(50.6)	1,371(49.5)	1,535(49.8)	164	12.0
	손해배상공동기금(비중)*	44(8.3)	53(8.7)	52(7.7)	△1	△1.9
	합 계(비 중)*	10,858(77.7)	15,668(81.3)	18,944(83.8)	3,276	20.9

* 전체 회계법인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5 기타 정보

◉ 감사품질 관련 정보 공시 강화 등을 위하여 외감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이사보수,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 신규 공시사항 확대

가. 이사 보수 : 5억원 이상 총 57명

◉ 2019사업연도 중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이사는 18개 회계법인 소속 총 57명으로, 이 중 4대 회계법인이 38명(66.7%)

○ 전체 회계법인의 5억원 이상 이사보수 평균은 약 7.7억원이며, 삼일이 20명으로 최다 인

원을 공시

5억원 이상 이사보수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등록 회계법인						미등록 법인	합계
	4대 회계법인					기타 등록법인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소계			
인원 (법인수)	20	10	6	2	38	13(8)	6(6)	57
총액	149.0	73.7	49.6	15.5	287.7	93.7	56.3	437.7
평균	7.4	7.4	8.3	7.7	7.6	7.2	9.4	7.7

나. 품질관리 예산 : 약 3%

◉ 등록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예산 비중*은 평균 3.0%이며, 이중 4대 회계법인은 평균 3.6%

* 총 인건비 대비 품질관리실 인건비

○ 전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예산은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담당직원의 경력 및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3% 수준이 다수

다. 기타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공시 확대

◉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공인회계사의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과 시간, 사업부문별 인력, 교육훈련 실적,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관리체계 등 품질관리 관련 신규 공시 항목이 확대

Ⅲ 시사점

1 회계법인의 공공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

○ 신외감법에 따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 감사 투입시간 증가 등으로 평균 감사보수가 상승하고 회계법인으로 공인회계사 유입이 증가하는 등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한 기반이 확충

– 회계법인도 Gatekeeper로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충분하고 적격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제고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할 필요

2 회계법인의 대형화 및 조직화 추세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에 따라 회계법인간 합병 및 인력 충원으로 회계법인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이사비율 감소 등 업무가 조직화되는 경향

*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 회계법인 : (FY17) 12개 → (FY18) 14개 → (FY19) 17개

– 상장회사의 거래 복잡성, IFRS 적용의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 회계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 강화, IT 전문가 확보 등 감사인력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3 중소형 회계법인의 감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여 회계법인 전체 감사부문 매출은 증대*1한 반면, 4대 법인은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라 외부감사 수행 실적 감소*2

*1 (FY17) 9,688억원 → (FY18) 1조 1,081억원 → (FY19) 1조 2,815억원

*2 (FY17) 4,663건 → (FY18) 4,363건 → (FY19) 3,987건

– 이에 따라 중소형 법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감사업무 비중이 증가할 소지가 있는 바, 중소형 법인은 고위험 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4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필요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기업에게는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피투자기업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의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를 보다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공시*할 필요

*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허위기재,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부실기재시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

5 부실감사 관련 책임확대에 대한 회계법인의 대응

○ '18년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와 관련한 대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제기 이후 신규로 발생한 대규모 소송은 없으나, 소송 장기화로 손해배상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외감법 개정으로 시효도 연장(3→8년)

* 진행중인 소송 금액 : (FY17) 3,192억원(218억원↑) → (FY18) 7,786억원(4,594억원↑) → (FY19) 8,872억원(1,086억원↑)

– 회계법인은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더불어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특히 등록법인의 경우 상장회사 감사업무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배상능력을 확충할 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2020. 10

□ 정부는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 이번에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구체적 요건은 고시로 설정)

–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 (담보제공)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등 중도인출 사유 및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2020. 10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19(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세제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등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 발표)에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 금년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여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하였음

○ 동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과제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음

○ 또한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등 여타 주요과제도 준비하여 TF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음